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24년도 제1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세종지역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 공고

2024. 10.

목 차

Ⅰ. 사업 공고 ····· 1

1. 사업 공고 ····· 1

2. 사업 개요 ····· 2

Ⅱ. 사업 공고 세부내용 ····· 3

1. 훈련기관 ····· 3

2. 육성산업 · 직종 ····· 5

3. 훈련과정 ····· 8

4. 훈련비 ····· 11

5. 훈련생 지원사항 ····· 15

6. 선정평가 프로세스 ····· 17

7. 기타 유의사항 ····· 18

8. 제출서류 ····· 19

Ⅰ 사업 공고

1 사업 공고

□ **공 고 명: 2024년도 제1차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세종지역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 공고**

□ **선정방법: 공모방식에 의한 선정**

□ **접수기간**

○ 일람표: 2024.10.25.(금) 17:00까지

○ 훈련계획서: 2024.10.29.(화) 17: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kyungju8205@sjepa.or.kr)**

※ 마감시간 이내 이메일 접수 분만 인정되며, 반드시 메일 제목에 기관명 기재

□ **담당자**

○ 허경주 연구원(Tel: 044-251-3256)

※ 공고문 및 공고 세부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기관에 있음

2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이 지역별 노동시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훈련과정이 적시에 운영될 필요성 증대**

- 다만,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중앙**(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체계**는 지역별 **차별성 고려와 훈련공급시기 측면에서의 한계가 지적**

○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시범 사업 운영**을 거쳐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신설**

- 이를 통해,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대응**하여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이 **적시에 공급**하고,

- 국민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직무능력개발, 취·창업 및 이·전직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21.8.17. 개정, '22.2.18. 시행)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 사업 규모

○ **(훈련목표 인원)** 400명(전직 및 취·창업훈련 80명, 고용유지훈련 320명)

□ 훈련 지원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는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본 사업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

Ⅱ 사업 공고 세부내용

1 훈련기관

□ 사업 참여 대상 【신청가능 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법령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유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 등 참조)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 또는 지정)

②「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④「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⑤ 그 밖에「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활용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로의 신고 등을 거쳐야함

□ 사업 참여 대상 【신청가능 훈련기관】 심사 기준

○ 인증보유 기관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1~5년) 보유 시, 별도 심사 없이 적정 판단

○ 인증 미보유 기관

- 신규훈련기관 대상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 여부 판단

○ 신규훈련기관 대상 심사기준

- 최근 1년간(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접수일 기준) 아래 4개 항목에서 기준에 따른 총 감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부적정 판단

구분	필수 확인 항목(4개)	판단기준 및 참고사항 등
준법성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여부	• **(시정명령)** 처분당 1점 감점 •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과정 또는 해당 직종 위탁 인정 제한)** 처분당 5점 감점 •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 ①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②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③ 제한기간 1년 이상 : 20점 감점 •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①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② 과태료 부과 2차: 20점 감점
	[2] 임금체불 이력 여부	• '시정지시일' 또는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 검찰 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3] 최저임금 위반 이력 여부	
재정 건전성	[4] 세금체납 여부	• **(국세 체납)** 10점 감점 •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 서류 미제출, 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불가, 불인정서류 제출은 10점 감점 적용

□ 사업 참여 대상【신청가능 훈련기관】심사 유의사항

○ 신청불가 훈련기관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증유예' 및 '조건부 유예' 판정을 받은 기관

  * 준법성, 훈련성과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곳임을 고려하여 별도 심사 없이 부적정 판단

- 준법성 및 재정건정성을 갖추지 못한 기관

○ 현장 조사 실시

- 심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관이 실제 적정한 시설·장비, 장소 등을 구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2 육성산업 · 직종

□ 육성산업 · 직종 개요

○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발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역 경제 성장 및 고용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인력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 및 직종 분야를 의미**

-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육성산업 KSIC 소분류, 육성직종은 NCS 직종 분류체계상 소분류** 기준으로 선정

□ 육성산업 · 직종 활용분야

○ 사업 참여 대상【신청가능 훈련기관】은 **'24년 세종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의 훈련과정 개발**에 육성산업·직종 기준을 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훈련과정은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정한 '육성산업·직종'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이어야 함

○ **훈련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육성산업·직종**으로 선정된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미래자동차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실감형콘텐츠, 스마트시티** 등의 **소분류 기준과 연계** 필수

1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 (개념) 그린뉴딜 스마트제조 혁신을 위한 정밀기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자부품에 활용되는 고기능성 소재·부품·장비를 제조, 성형, 관리하는 기능·기술에 관한 직종

육성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육성직종 (NCS 소분류)	
20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020401	생산관리
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020402	품질관리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40202	토목시공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50302	기계생산관리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150401	기계품질관리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0501	기계장비설치·정비
241	1차 철강 제조업	151000	금형(공통)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160101	금속엔지니어링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170401	플라스틱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00107	인공지능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00109	스마트물류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00110	디지털트윈

2 미래자동차모빌리티

○ (개념) 자율주행차와 실외자율주행 로봇, UAM 등 미래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산업으로 자율주행차, 실외 자율주행 로봇, 교통서비스 분야의 기술을 개발, 기획, 설계, 관리하는 기능·기술에 관한 직종

육성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 부품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2	전기 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육성직종 (NCS 소분류)	
010101	프로젝트관리
020402	품질관리
150101	설계기획
105012	기계설계
150302	기계생산관리
150602	자동차제작
151103	스마트공장 시스템 관리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190305	전자부품개발
190308	로봇개발
200101	정보기술전략 · 계획
200102	정보기술개발
200103	정보기술운영
200107	인공지능
200202	무선통신구축

3 바이오헬스

○ (개념)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바이오활성 식·의약 소재, 재생의료 바이오소재, 뷰티케어 소재,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 등의 제품을 개발, 생산, 가공, 관리하는 기능·기술에 관한 직종

육성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62	전자 부품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육성직종 (NCS 소분류)	
020401	생산관리
020402	품질관리
060204	임상지원
150302	기계생산관리
170101	화학물질 · 품질관리
170306	의약품
170307	화장품
170401	플라스틱
170501	바이오의약
170502	바이오화학
170503	바이오기술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190309	의료장비제조
190310	광기술개발
210101	식품가공

4 실감형콘텐츠

○ **(개념)**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접목한 교육콘텐츠, 문화, 헬스케어 산업으로 AR, VR, XR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요구되는 기술 개발, 운영, 생산, 관리하는 기능·기술에 관한 직종

육성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육성직종 (NCS 소분류)	
		020101	총무
		020402	품질관리
262	전자 부품 제조업	080302	문화콘텐츠 제작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080303	문화콘텐츠유통·서비스
265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080304	영상제작
273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150302	기계생산관리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90305	전자부품개발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190312	가상훈련시스템개발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0102	정보기술개발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200103	정보기술운영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0106	정보보호
857	교육 지원 서비스업	200107	인공지능
		200202	무선통신구축
		200204	실감형콘텐츠제작

5 스마트시티

○ **(개념)** 스마트도시기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와 연관되는 산업으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크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해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분야의 기획, 생산, 운영, 관리하는 기능·기술에 관한 직종

육성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육성직종 (NCS 소분류)	
		020201	총무
182	기록매체 복제업	020203	일반사무
262	전자 부품 제조업	020301	재무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020402	품질관리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120202	장례서비스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150302	기계생산관리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612	전기 통신업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90303	정보통신기기개발
631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200102	정보기술개발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200103	정보기술운영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00110	디지털트윈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200203	통신서비스
		200204	실감형콘텐츠제작

3 훈련과정

□ 훈련과정 유형

○ **훈련과정**은 **집체훈련과정**으로 **한정**

-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비대면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과정 심사·승인 이후 「집체훈련의 원격 대체 지침」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훈련분야 및 훈련유형

○ 훈련과정 개발시 훈련분야는 '육성산업·직종'이며, **훈련유형**은 ① **고용유지훈련**과 ② **전직 및 취·창업훈련**으로 구분하여 **훈련과정 접수 필수**

1. 훈련분야		2. 훈련유형(택 1)
1 육성산업·직종 ※ NCS 130% → 훈련비 심사·정산 불요 ※ NCS 300% → 훈련비 심사·정산 필요	⇨	**1 고용유지훈련(재직자 계좌제)** – 재직자의 고용유지가 주요 목적인 훈련을 의미 **2 전직 및 취·창업훈련(실업자 계좌제)** – 재직자의 전직 및 실업자의 취·창업이 주요 목적인 훈련을 의미

□ 훈련과정 유효기간 및 훈련기간 그리고 내용 변경

○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고용센터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 훈련과정의 훈련기간은 최대 1년 이하로 제한

□ 훈련기관 실시가능직종 검토사항

○ **훈련기관의 유형**에 따라 **실시 가능 훈련직종**이 정해져 있으며,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직종 부합 여부 확인 필요**

- 훈련기관은 그 유형(지정직업훈련시설,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따라 실시 가능 훈련직종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4조 등)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시 가능 직종을 추가·변경 가능

  *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현재 실시가능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예상소요기간 1~2주, 법정처리기간 20일)

〈 훈련기관(시설) 유형별 직종부합성 검토사항〉

지정시설	제출 증빙자료	검토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법인·단체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 지정서에 명시된 직종과 신청한 훈련직종 부합성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해당 학교 학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된 학과(전공)와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 교육과정편성표	• 교육과정편성표의 과목과 신청한 훈련 직종 부합성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교육부(www.neis.go.kr)에서 발급한 교습비등 게시표	• 교습비등 게시표의 교습과목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 정관 • 소속 회원사 명단	• 사업주단체 및 교육적 목적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타 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기관)	• 훈련기관 지정서(추천서)또는 교육훈련 법적근거 및 기관 정관	• 지정서 또는 법령상에 명시된 훈련분야와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 훈련과정 NCS 직종 분류 적정성 검토

○ **훈련과정의 NCS 직종 분류**는 **훈련비의 지원단가** 및 **훈련비의 국비지원율**(1회 이상 참여자의 자부담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

- 훈련과정의 내용상 가장 많은 시간으로 편성된 직종이 해당 훈련과정의 NCS 직종 분류 확인

- NCS가 개발되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적정한 NCS 직종 분류 확인

  * 심사 시 NCS 설정의 적정성 판단

○ **기존 통합심사를 통해 개설된 훈련과정** 등과 **중복되는 훈련과정은 본 사업을 통해 개설하는 것이 불가함**

- 심사 시 훈련과정과 **기존 훈련과정 간 중복 여부**(기존 훈련과정 간 훈련과정명, 훈련목표, 교·강사, 시설, 내용 등 종합판단)**를 반드시 확인**하며, **중복과정**은 **부적정 판단**

- 특히 **이전(최근 1년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통합심사**에서 훈련내용·방법 등이 미흡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과 그 내용 등이 **동일·유사한 훈련과정**은 반드시 **부적정 판정**

  * 심사 시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운영현황 및 기존 통합심사 신청·심사 이력에 대한 정보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협조를 통해 확인 단계 거침

□ 훈련과정 기본 요건 충족 여부

○ 훈련과정은 **참여자의 취·창업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훈련시간·기간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최소 요건 설정**

- 훈련과정의 유형에 따라 기본 요건(훈련시간 및 기간, 강의실 최소면적)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야 함

  * ① **재직자의 고용유지**가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고용유지 훈련)**은 재직자 계좌제의 기본요건에 따라 심사

  * ② **재직자의 전직 및 실업자의 취·창업**이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전직 및 취·창업훈련)**은 실업자 계좌에의 기본요건에 따라 심사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유형별 과정 편성 기본요건(통합심사 〉

구 분	과정편성 기본요건 검토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훈련대상별 훈련과정 최소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 **실업자 계좌제: 10일 이상, 40시간 이상** • **재직자 계좌제: 2일 이상, 16시간 이상** ※ 각 훈련사업의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강의실	**[훈련시설(강의실)의 최소 면적기준]** • **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계좌제: 10인 기준 30㎡(1인 추가 시 1.5㎡)** ※ 정원수가 위에 제시된 기준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에도 해당 면적은 충족해야함 ※ 최소 준수 여부 판단하고, 과정 적정성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
실습장	**[실습실(실습장)의 최소 면적기준(권고)]** • NCS 적용과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훈련과정이 분류된 NCS 직종상 훈련기준의 50% 면적 ※ 1명 추가 시 1인당 추가면적 기준 적용 ※ NCS 훈련기준상 기준인원이 10명 미만인 실습실의 최소면적은 기준 인원에 필요한 시설면적의 100% 적용
기타	**[기타사항]** • 그 외 관련 법령 규정(고시), 공고 등에 제시된 필수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

4 훈련비

□ 훈련비용 지원

○ **본 사업**을 통한 **훈련비용**은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를 기본 인정**

- 훈련비 심사 및 회계정산 미실시

○ **세종RSC가 선정한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의 경우 추가 훈련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단가 300% 인정**

- 훈련비 심사 및 회계정산 실시, 회계 증빙서류 보관 필수

  * 훈련비는 130%, 130%초과 300% 인정

  * NCS 지원단가의 130%보다 높은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과정의 경우 회계정산 대상에 포함되며, 훈련기관은 회계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 필수

〈 비목별 예산 지원 및 산정기준(훈련비 산출기준) 〉

대분류	비목	세목	지원기준/산정기준	증빙자료
직접비 (65% 이상)	강사료	내부 강사료	▪ 내부강사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액과 퇴직급여로 산정하되 훈련기관 내부규정에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내부강사료 및 출장 여비는 실비로 인정 ▪ 강사별로 산정하며 시간당 월급여액은 퇴직급여를 포함한 월급여액에 1개월 20일,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160시간을 나누어서 산정함	① 지출결의서 ② 급여가 명시된 위촉계약서(시간당 금액 포함) 또는 근로계약서(월 급여액, 연봉포함) ③ 급여대장 ④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⑤ 계좌 이체증 사본 ⑥ 내부강사료 지급규정 ⑦ 1인이 강의와 행정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내부강사료 or 인건비 중 하나의 비목을 선택하여 산정(중복지원 불가) ※ 훈련기관 출장여비 지급규정, 지출결의서 및 지출 영수증
			▪ (산식) 퇴직급여를 포함한 월급여액*강의시간/160시간−150%	
		외부 강사료	▪ 외부강사는 일반강사와 특강강사로 구분함. ▪ 강사료는 훈련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실비로 산정(강사여비 포함)하되, 훈련내용과 훈련시간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결정으로 지원 가능	① 지출결의서 ② 강사위촉계약서(시간당 금액 포함) ③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계좌 이체증 사본 ⑤ 강사료 지급 규정 ※ **(필수)** 훈련강사 위촉계약서(시간당 금액 포함) 반드시 제출 필요
			▪ 시간당 단가*강의시간	
	교재비	교재 구입비	▪ 실제 발생비용을 근거로 산정하되, 훈련에 필요한 주교재에 대한 구입비용	① 지출결의서 ② 견적서(구입교재 단가 명시) ③ 거래명세서 및 세금 계산서
			▪ 훈련인원*주교제 구입단가	
		교재 인쇄비	▪ 훈련에 필요한 주/부교재 등에 대한 제작 및 인쇄비용 〈훈련인원×쪽당 인쇄비용×쪽수〉	① 지출결의서 ② 견적서(쪽당 인쇄 비용 및 쪽수 명시) ③ 거래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④ 자체교재 제작 시, 교재개발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쇄 견적서 제출

대분류	비목	세목	지원기준/산정기준	증빙자료
직접비 (65% 이상)	시설비	시설 임차비	▪ 훈련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임차 및 관리비용을 각 시설별로 산정 (임차보증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각 시설별 훈련시간의 합계는 총 훈련시간과 일치해야 하며, 각 시설별 훈련시간의 합계가 총 훈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해야 함	① 지출결의서 ② 임대차계약서 월임차 등의 경우 해당 훈련시설 면적 및 총임차면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③ 계좌 이체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시설 감가 상각비	▪ 자기 소유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감가상각비 산정 ▪ 훈련월수는 총 훈련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 취득금액을 알 수 없거나 취득금액 대신 해당 시설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인정함 ▪ 훈련시설은 강의실, 실습실 등 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설만 인정함 ▪ 각 시설별 훈련월수의 합계가 총 훈련월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취득금액/360)*훈련월수*(훈련시설면적/총 시설면적) ▪ (해당 시설 감정가액/360)*훈련월수*(훈련시설 면적/ 총시설면적)	① 훈련시설의 취득금액(또는 감정가액)이나 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계약서, 매입 세금계산서,부동산 등기부등본, 최근감정가액 등 ② 해당 훈련시설면적 및 시설면적이 확인 가능한서류
	장비비	장비 임차비 및 소프트웨어 사용료	▪ 장비를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에 필요한 훈련임차 및 관리비용 ▪ 훈련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한하여 최소금액으로 지원함 〈사용료×사용개수(횟수)×사용기간〉 〈월사용료/160×훈련시간〉 〈인당 사용료×훈련인원〉	① 지출결의서 ② 장비임대 계약서 및 장비 사용료 계약서 ③ 거래명세서 ④ 계좌이체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장비 감가 상각비	▪ 기존 장비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취득일로부터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주 장비로서, 훈련에 필요한 훈련장비 감가상각비 〈취득가액/60×장비사용일수/30〉 ▪ 훈련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한하여 최소금액으로 지원 〈사용료×사용개수(횟수)×사용기간〉 〈월사용료/160×훈련시간〉 〈인당 사용료×훈련인원〉	① 지출결의서 ② 주장비 취득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③ 소프트웨어 사용료 계약서 ④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장비 유지 보수비	▪ 훈련기간 동안 발생하는 훈련장비의 수리 및 부품교체 등에 소요되는 최소금액 〈월평균발생액/30×훈련일수〉	① 지출결의서 ② 유지보수 지출내역서 ③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④ 유지보수비 산정 내역서 ⑤ 직전년도 해당 훈련 장비의 월별유지보수비 실제 발생금액

	기타 훈련 비용	보험료	▪ 훈련기간 중 훈련생의 안전에 관련된 보험료 <훈련인원×인당보험료>	① 지출결의서 및 보험 가입 계약서
		기타 훈련 비용	▪ 상기 직접비의 비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훈련에 필요한 비용으로 훈련기관이 산정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가능 ▪ 별도로 지원되는 훈련생에 대한 훈련 수당, 기숙사비(숙박비), 식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량교과) 재량교과(입·수료식, 박람회 참석 등)는 내용 및 예산 편성 시 관련비용은 적정성 확인 후 인정	① 지출결의서 ②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 지원기준은 통합심사 자료집 준용

대분류	비목	세목	지원기준/산정기준	증빙자료
간접비 (35% 이내)	인건비	인건비	▪ 훈련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정(운영) 인력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월평균 인건비는 월급여액 및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350만원을 한도로 함 ▪ 훈련과정별로 2인 이상 참여 시 참여율의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행정(운영) 인력이 2개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는 행정(운영)인력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인건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인력별로 산정하며 시간당 월급여액은 퇴직급여를 포함한 월급여액에 1개월 20일,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160시간으로 나누어서 산정함 <월평균인건비×훈련시간/160×참여율>	① 지출결의서 ② 근로계약서 ③ 급여대장 ④ 근로소득원원천징수영수증 ⑤ 계좌이체증 사본 ⑥ 행정(운영)인력의 업무분장표 등
	홍보비	홍보비	▪ 훈련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훈련생 모집, 홍보물 제작, 광고비용 등 실비로 산정하되,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산정함 ▪ 훈련비 심사를 통해 직접비가 조정될 경우, 홍보비도 직접비의 15% 이내로 조정됨	① 지출결의서 및 지출내역 ②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③ 전년도 홍보비 지출내역 (전년도 해당 사업 관련 집행실적이 있는 경우)
	운영지원비	출장비	▪ 훈련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실비로 산정하되, 교통비 및 식대, 숙박비를 포함(내부 강사는 강사료에서 산정함)단, 훈련기관의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산정함. ▪ 내부강사가 강의를 위해서 출장을 가는경우에는 강사료에서 산정함	① 지출결의서 및 지출내역 ② 출장비 지급규정 ③ 전년도 출장비 지출내역(전년도 해당 사업 관련집행실적이 있는 경우) ④ 영수증
		공공요금	▪ 해당 훈련기관이 포함된 시설에서 발생된 직전연도 공공요금을 기준으로 산정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등) <월평균 공공요금/160×훈련시설면적/총시설면적×훈련시간> ▪ 해당훈련과정에 대한 공공요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측정 부과되는 경우 직전연도 월평균 공공요금 발생액 지원 ▪ 기관부담 사회보험료는 내부강사 및 인건비 산정기준을 준용하되, 내부강사 배율은 적용하지 않음	① 지출결의서 ② 해당훈련시설의 월별공공요금 납부영수증 ③ 공요금 산정 내역서(훈련과정별로 배분한 경우배분 근거 포함) ④ 해당 인원별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납부현황(사회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 한함) ⑤ 직전년도 해당 훈련시설의 월별 공공요금 부과내역서 ⑥ 신규훈련기관의 훈련시설이 새 건물인 경우 건물관리비 내역서로 대체 가능

		사무 용품비	▪ 훈련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을 실비로 산정 ▪ 자산취득 및 임차비용은 제외	① 지출결의서 및 지출내역 ②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무용품비 세부 산성내역 ④ 직전년도 사무용품비 지출내역
		회의비	▪ 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 사용료, 다과비, 자료인쇄비 등 실비로 산정 ▪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명기된 회의록을 작성 시 인정 ▪ 회의수당, 훈련생 간담회비 불인정	① 지출결의서 및 지출내역 ②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③ 회의록 ④ 직전년도 회의비 지출냉겨 및 회의로
	기타 간접 비용	기타 간접 비용	▪ 상기 간접비의 비목에 포함되지 않으나,훈련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타간접비용을 제외한 훈련비(불인정금액 제외)의 15% 이내에서 산정함 단, 훈련기관이 기타간접비용을 제외한 훈련비의 15%를 초과하는 간접비용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 지원가능(인건비 및 자산취득과 임차비 등 자산성 있는 비용은 불인정)	① 기타간접비용 산정 내역 및 입증서류(훈련비의 15% 이상 산정하는 경우)

〈 특강강사료 기준 〉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한도액 (시간당)	25만원	20만원	15만원	10만원
자격	▪ 차관(보)급 이상 공무원	▪ 4급 이상 공무원	▪ 5급 이상 공무원	▪ 6급 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 임원급 (기업체 사장급)이상	▪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연구위원급)이상	▪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부연구위원급)이상	▪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 부총장급(대학) 이상	▪ 정교수급 이상	▪ 부교수급 이상	▪ 조교수급 이상
	▪ 박사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 박사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 박사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 박사취득 후 즉시
	▪ 석사취득 후 17년	▪ 석사취득 후 12년	▪ 석사취득 후 8년	▪ 석사취득 후 4년
	▪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23년 이상	▪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18년 이상	▪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13년 이상	▪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8년 이상
	▪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25년(27년) 이상	▪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20년(22년) 이상	▪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15년(17년) 이상	▪ 학사(전문학사)취득 후 동일분야 현장경력 10년(12년) 이상
	▪ 산업체 현장경력 30년 이상	▪ 산업체 현장경력 25년 이상	▪ 산업체 현장경력 20년 이상	▪ 산업체 현장경력 15년

○ **(추가훈련비) 훈련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① 육성산업·직종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훈련과정일 것

② 훈련교·강사, 훈련내용, 훈련대상자, 실습비를 고려할 때 고급·특수과정에 해당할 것

〈 고급 · 특수과정의 요건 〉

연번	요건	세부내용
①	훈련 교 · 강사	▪ 훈련교 · 강사 전공, 경력, 자격 등이 우수할 것(㉠ 해당분야 관련 경력 10년 이상, ㉡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등)
②	훈련내용	▪ 난이도가 높은 훈련과정(Level 5 수준 이상)일 것 ▪ 타 훈련기관에서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과정일 것
③	훈련 대상자	▪ **(선행학습)** 4년제 대학(유사 전공 포함) 전공자 또는 고급 및 특화 세부기준별 NCS 목표수준 미만의 능력단위 및 직무능력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일 것 ▪ **(직무경력)** 현장 경력 3년 이상 등 전문 인력 및 중간관리자, 관리자, 책임자 등일 것 ▪ **(자격증 등)** 기사, 1급, 기술자 초급 등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자일 것
④	실습비	▪ 고가의 소모성 실습비가 많이 소요되는 과정일 것 ▪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신 경향의 훈련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

○ **각 요건별 세부내용 중 한 개 이상 충족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 각 요건별 충족 여부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협조

① ~ ④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할 경우 고급 · 특수과정으로 인정

5 훈련생 지원사항

□ 훈련생 훈련비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참여자는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 국비 지원(훈련생 자부담 미발생)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에서는 200만원 이내에서 차감

- 훈련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 계좌한도에서 200만원만 차감(참여자의 잔여 계좌한도가 200만원 미만일 경우, 잔여 금액 차감)
- 훈련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계좌한도에서 해당 금액만 차감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T등 여타 훈련비 전액 지원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참여로 인정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

○ 21년도 「찾아가는 직업훈련」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훈련비를 전액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하여 훈련비를 전액 지원

○ 수강신청 시 재직자(근로자,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아닌 자)인 사람은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참여로 전액 지원받은 훈련비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전액 지원 혜택을 적용받으며 수강 신청 및 참여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 계좌한도는 5년간 300만원이며, 계좌가 소진된 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00~200만원 추가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계좌 잔액이 남아있어야 훈련비 국비 지원 가능

○ 국비 전액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훈련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직종별 평균 취업률 등에 따라 훈련비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

○ 훈련장려금 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원기준 준용)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는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훈련장려금의 지급 기준 〉

구분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참여 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 시
실업자	미지급	月 최대 11.6만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月 최대 11.6만원	月 최대 11.6만원
월60시간(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지급	미지급
월60시간(주 15시간)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지급	月 최대 11.6만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금자(별도기준 충족)	미지급	月 최대 11.6만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지급	月 최대 36만원

□ 특별훈련수당

○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 중**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훈련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훈련장려금과 더불어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급**(월 20만원)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상 특별훈련수당 지급 요건

- **(훈련과정)** 개별 RSC에서 선정한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일 것
- **(훈련시간)** 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일 것(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것)
- **(훈 련 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상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

  * 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

□ 생계비 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리로 생계비 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개요

① **(지원대상)**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신청일 기준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일 것

② **(신청자격)** ①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일 것, ②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③ **(대부한도)** 1인당 월별 200만원 이내 대부(총 대부한도는 1,000만원 이내)

④ **(상환조건)** 연 1.0% 금리(1년 ~ 3년거치, 3년 ~ 5년 균등분할 상환)

5 선정평가 프로세스

프로세스	주요내용	일정
1차 세종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 공고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지	10.24.(목)
⇩		
1차 세종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기관 · 과정 모집	○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 훈련과정일람표 사전 제출** **– 사업계획서 및 훈련계획서 제출**	10.25.(금) 17:00까지 10.29.(화) 17:00까지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심사	○ 훈련기관, 훈련과정 적정성 · 적합성, 훈련목표 적정성, 훈련가능인원, 훈련비 등 심사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11.01.(금) 예정 추후안내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확정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심사결과에 대한 특별분과위원회 의결 –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를 최종 확정	11월 1주차
⇩		
훈련과정 승인	○ **(세종RSC)** 훈련과정 인정신청서 제출 → **(관할 고용센터)** 훈련과정 인정 및 개설	11월 2주차
⇩		
훈련과정 인정 통보 및 훈련생 모집	○ 훈련생 선발 및 훈련 실시 – 훈련개시일 10일 전까지 HRD-Net 등록 필수 – 과정 유효기관: 최초 인정일로부터 1년	12월 중 시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될 시 기관에 사전 통보 예정

6 기타 유의사항

□ 훈련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2024년도 세종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공급조사 보고서」 등 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반영하여 훈련계획서 작성

- 보고서는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 제출 및 선정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서류보완 및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최종선정된 기관은 개별통지하며, 미선정 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기타사항

○ **훈련기관 관리번호 미발급 기관**은 사업 선정 전/후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이 필요**함

○ 규제를 최소화하여 직업훈련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함으로 **사업 추진 시** 문의사항은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과 협의 후 사업 추진 권고**

- 관련 지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월 공고되는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시어 사업체 참여하여야 함

○ 문의 :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044-251-3256)

- 본 사업과 관련된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며 전화, 구두, 단순 이메일 질문 등의 응답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문서 질의: 기관장(대표자)의 날인이 되어 있으며, 공문서 형태로 접수된 문서

7 제출서류

□ 제출서류 안내

○ (제출방법) 접수 기간 동안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훈련기관은 기본사항에 해당되는 자료를 준비하여 접수기간 마감일까지 제출
-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을 활용하고, 파일변환 없이 해당 파일로 작성한 이후 제출 필수
- **[별지 제2호 서식]** 훈련계획서는 인쇄물 제출이 필요하며, 추후 공지 예정

  * 접수된 훈련과정을 종합하여 섭외할 심사위원회의 인원수 분량에 맞는 인쇄물이 필요하며, 심사 이전에 훈련기관별로 별도의 공지 예정

□ 제출서류 항목

○ 기본 사항

서식번호	서 식 명
필수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기관 현황 요약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세종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세종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세종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일람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세종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예산조정내역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세종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세종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 실시계획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세종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채용약정서(양성과정 진행 시 제출)

*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 서식은 심사 승인 후 추후 제출

○ 신규기관 또는 훈련기관인증평가 미보유기관 추가서류

서식번호	서 식 명
별지 제7호 서식	훈련기관 및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동의서 날짜는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권고. 접수 마감일 넘길 수 없음**
신규기관 필수	국세 &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한 증명서]**